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공보담당자 엄재상

전화 054-820-4310 / 팩스 054-820-4554

보도자료

2024. 9. 23.(월)

제 목

봉화 ○○제련소 비소 중독 사상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대표이사 등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엄재상)은 '23. 12. 6. 경북 봉화 소재 아연 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출된 비소에 중독되어 '23. 12. 9. 1명 사망, 3명이 비소 중독의 직업성 질병에 이른 사건을 수사하여, 금일(9. 23.) 원청 대표이사 A○○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제련소장 B○○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각 구속 기소하였음

* 이 사건은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임

- 비소 누출시 통제의무를 위반한 원청 안전관리이사, 안전관리팀장 등과 하청 대표이사, 차장 등 8명 및 하청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원청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하였음
- 제련소장 B○○ 등은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유해물질 정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미이행하여 근로자들이 비소에 노출되어 사상에 이른 사실이 확인됨
- 원청 대표이사 A○○는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 관련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았고, 하청업체 선정시 형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적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I 사건 개요

1. 피고인(총 12명)

피고인	지위	죄명	처분
A〇〇	원청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총괄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구속 기소
B〇〇	원청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제련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C〇〇~H〇〇	원청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불구속 기소
I〇〇	하청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J〇〇	하청 乙 주식회사의 임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	원청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乙 주식회사	하청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2. 주요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〇〇(원청 본사 총괄대표) 및 甲 주식회사(원청 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구축, 도급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미이행하여 '23. 12. 9. 근로자 1명을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고,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비소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에 이르게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

* 무색, 마늘향의 독성 가스인 삼수소화비소(일명 '아르신'), 통칭 '비소'라 함

나. 피고인 B〇〇(제련소장), C〇〇~J〇〇(원·하청 임직원 8명), 주식회사, 乙 주식회사(원·하청 법인)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밀폐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작업책임자 지정 등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미이행, 비소 측정기 관리를 비롯한 통제계획 준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비소가 유출되어 근로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II

수사 경과

- '23. 12. 6. 비소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 '23. 12. 합동현장감식 참여 및 합동수사회의 개최
- '24. 1. 노동청, 甲 회사 본사 및 제련소, 乙 회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 '24. 8. 29. 안동지원, A○○, B○○ 구속영장 발부
- '24. 9. 23. 안동지청, A○○, B○○ 구속 기소 및 C○○~J○○, 甲 회사, 乙 회사 불구속 기소

III

수사 결과 및 의의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한 최초 사례

- 이 사건은 甲 주식회사가 비소, 카드뮴 등 급성중독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도급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왔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임
- 甲 주식회사의 제련소는 2008년부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비소 중독 사고 등 동종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음
- A○○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甲 주식회사의 제련소장으로 재직하여 제련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22년 2월에도 아연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중독된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2022년 하반기 외부기관 위탁점검시 동일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임

다각도의 수사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조치 불이행 규명

- 비소 등 위험물질 작업이 많은 甲 주식회사의 작업환경에 대한 검증, 현장 근로자들 진술 청취 및 휴대폰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甲 주식회사의 상무, 이사 등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의 삭제를 모의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甲 주식회사의 조직적·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함
- 나아가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의무, 유해성 고지 의무, 화학설비 수리 작업시 작업책임자 지정 의무,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밝혔음

중대재해 사건 수사기관 협력체계 구축

- 사고 발생 직후 노동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환경부와 합동 현장감식, ② 신속한 압수수색 진행, ③ 수사 진행 상황 공유를 위한 수사기관간 수시 회의 진행 등을 통해 수사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원인과 관련자들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였음

III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음
- 한편, 기소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임 